

의안번호	제 319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12월 15일 (제344회)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출연월일	2015년 12월 일

#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12월 일  
제출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정례회 운영에 있어 전년도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,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기간을 확보하여 내실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·2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변경하고
-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제1조 중 “동법시행령” 을 “같은 법 시행령” 으로 변경
- 제4조 제1항 중 “7월 1일” 을 “6월 8일” 로, 같은 조 단서 중 “당해연도” 를 “해당 연도” 로 변경
- 제4조 제2항 중 “11월 12일” 을 “11월 8일” 로 변경
-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변경

## 3.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 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319호

##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동법시행령 “을 ” 같은 법 시행령 “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7월 1일 “을 ” 6월 8일 “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당해연도” 를 “해당 연도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11월 12일” 을 “11월 8일” 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<u>동법시행령</u>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집회일)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<u>7월 1일</u>에 집회한다. 다만,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·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<u>당해연도</u>에 처음 구성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.</p>	<p>제4조(집회일) ① ----- --- <u>6월 8일</u>----- 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 연도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<u>11월 12일</u>에 집회한다.</p>	<p>② -----<u>11월 8일</u>-----.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제6조(회의운영 등) ① 제1차 정례 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승인을 하 고,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 할 수 있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하고, 기타 의회의 부 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제6조(회의운영 등) ① -----  
-----  
--- 그 밖에 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그 밖에 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44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7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는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참고자료

## 사·도의회 정례회 집회일 현황

구분	1차 정례회	2차 정례회	비고
서울	6. 20.	11. 10.	
부산	6. 15.	11. 11.	
대구	6. 15.	11. 6.	
인천	6월 둘째 주 화요일	11월 둘째 주 화요일	
광주	7. 1.	11월 첫 번째 화요일	
대전	7. 1.	11. 5.	
울산	7. 5.	11. 12.	
세종	6. 15.	11. 15.	
경기	6월 셋째 주 화요일	11월 첫째 주 화요일	
강원	7. 5.	11. 7.	
충북	7. 1.	11. 12.	
충남	6. 15.	11. 5.	
전북	7월 둘째 주 화요일	11. 8.	
전남	7. 1.	11. 7.	
경북	6. 10.	11. 6.	
경남	7월 두 번째 화요일	11월 첫 번째 화요일	
제주	7. 5.	11. 15.	